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-3호

##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

「수상레저안전법」제25조에 의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8월 14일

태 안 해 양 경 찰 서 장

## 1.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

연번	장 소	금지구역	금지대상	금지기간
1	충남 태안군 원북면 학암포해수욕장	수영경계선 외측 20미터 이내 해상	동력수상레저기구	해수욕장 개장기간
2	충남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	"	"	"
3	충남 태안군 근흥면 연포해수욕장	"	"	"
4	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포해수욕장	"	"	"
5	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해수욕장	"	"	"
6	충남 태안군 안면읍 삼봉해수욕장	"	"	"
7	충남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수욕장	"	"	"

2. (재검토 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2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 부칙<제2014-3호, 2015. 1. 5.>

-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종전의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15-1호는 폐지한다.
- ③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.

## 부칙<제2017-3호, 2017. 8. 14.>

-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종전의 태안해양경비안전서 고시 제2014-3호는 폐지한다.
- ③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.